

외국법자문사 제도 소개

A Brief Guide to Foreign Legal Consultant



법무부

01

외국법자문사란 ?

-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를 말합니다.
- 외국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한 후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협의 '외국회원'으로 활동





근거법령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 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02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있는 외국변호사의 범위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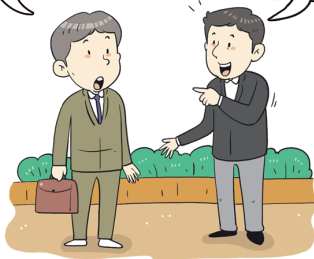
- 대한민국은 FTA를 통하여 법률시장을 개방한 국가의 변호사 자격자에 한해서만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부여하는 선별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2016. 11. 현재 대한민국이 법률시장을 개방한 FTA 상대국은 미국, EU,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개방의 범위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단계별 개방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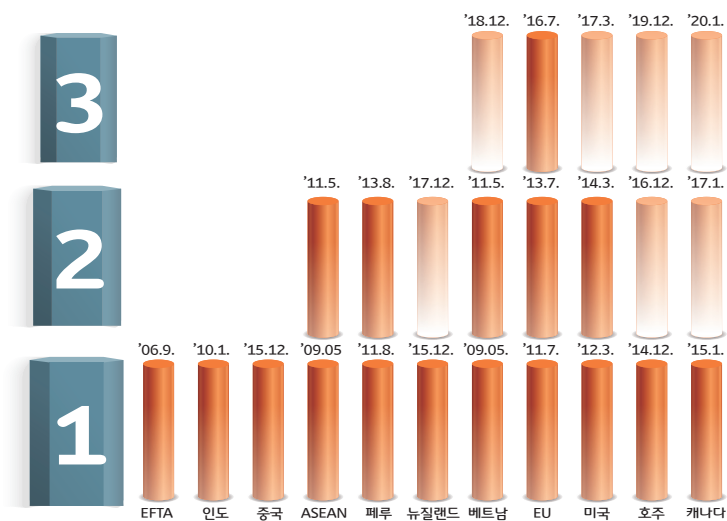
- 1단계 개방국의 외국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외국법 자문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개방국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로펌과 사안별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개방국 로펌은 대한민국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대한민국)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하여 국내·외 법적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이와 같은 선별적, 단계적 개방을 하는 이유는 법률시장 개방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법률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은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보→법률시장 개방→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일본 변호사인데,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나요?

2016. 11.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
일본에 대하여 법률시장을 개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국가 및 단계별 개방 시기



근거법령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 ~ 6. 생략

- 외국법자문사법은 FTA 상대국의 외국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년의 업무 경력 요건이 필요합니다.
-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자격국 :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

- 다만,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에 있어서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산입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자면 미국변호사가 영국에서 1년, 한국에서 2년 동안 미국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였다면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경력을 충족한 것입니다.
- 참고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되려는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에서 3년을 포함한 전체 5년의 법률 사무 수행 경력이 필요한데, 이때는 순수 원자격국에서의 3년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원자격국 내에서 유효한 외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합니다.

저는 중국 변호사인데,
한국에서 3년 동안 중국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했으니,
외국법자문사로 자격승인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의 법률 사무 수행경력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중국이나 중국 이외 외국에서 최소 1년
이상 직무경력을 쌓은 후 신청하세요.

근거법령

외국법자문사법 제4조(직무 경력) ①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등의 사무를 근로자인 자기의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4조(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법률사무 수행 기간 : 3년까지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 2년까지

04

외국법자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

- 외국법자문사는 본인이 자격을 취득한 원자격국의 법령,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고, 국제중재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대한민국에서의 국제중재사건 대리는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비등록 외국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년 중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어서는 안됩니다.

외국법자문사가 할 수 없는 일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송무 등 각종 국내법 관련 업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구치소에서의 변호인 접견 등 대한민국법상 국내 변호사에게만 허용되는 업무는 외국법자문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①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4조제3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변호사는 제24조제3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1년에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체류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3.2]

05

외국법자문사와 비등록 외국변호사의 차이는?

- 외국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는 비등록 외국변호사입니다.
- 변호사법상 변호사 이외의 사람은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법 자문사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 법령 및 국제관습법에 관한 법률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는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 비등록 외국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보조자로서의 역할 수행만 가능합니다.
- 외국법자문사와 비등록 외국변호사는 자기 명의로 (외국법 등에 대한)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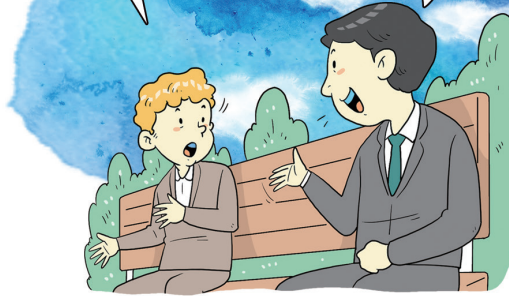
- 대한민국 변호사 이외의 자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명칭을 표시 또는 기재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외국법자문사 자격의 표시 방법은 외국법자문사법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① ‘원자격국의 명칭* + 법자문사’ 또는, ② ‘원자격국의 명칭* + 법자문사(원자격국 언어로 원자격국의 자격 명칭 표기)’ 또는, ③ ‘원자격국의 명칭* + 법자문사(원자격국 언어로 원자격국의 자격 명칭 표기, 원자격국+변호사)’와 같이 자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영국 변호사의 경우, ① 영국법자문사, ② 영국법자문사(Solicitor-England & Wales), ③ 영국법자문사(Solicitor-England & Wales, 영국변호사)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 가능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의 경우, ① 미국법자문사, ② 미국법자문사(U.S. Attorney-at-law), ③ 미국법자문사(U.S. Attorney-at-law, 미국변호사)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국 Solicitor로
영국법자문사인데, 명함에
제 직책을 어떻게 기재하면
되는가요

① 영국법자문사,
② 영국법자문사(Solicitor - England & Wales),
③ 영국법자문사(Solicitor - England & Wales,
영국변호사)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령

①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 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자격승인 절차 상담



자격승인 예비신청 (시행령 제5조)



자격승인 정식신청 (법 제3조)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제출
- 서약 내용의 확인



법무부 심사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신청인 서면통지
(법 제8조 제1항)

대한변협 서면통지
(법 제8조 제1항)

관보 고시
(법 제8조 제1항)



대한변협 등록 신청 (법 제10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현황 (2016. 11. 현재)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칭	대표자	설립인가일	본점 사무소 소재국
1	롭스 앤 그레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Ropes & Gray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김용균	2012.7.19	미국
2	셰퍼드 멀린 리chter & 햄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김병수	2012.7.19	미국
3	클리포드 찬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Clifford Chance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토머스 리처드 월시	2012.7.19	영국
4	코헨 앤드 그레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Cohen & Gresser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손승철	2012.9.14	미국
5	심슨 대처 앤 바틀렛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손영진	2012.9.14	미국
6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McDermott Will & Emery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이인영	2012.9.26	미국
7	폴 헤이스팅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Paul Hasting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Seoul)	김종한	2012.9.26	미국
8	클리어리 가틀리브 스티븐 앤 해밀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한진덕	2012.9.26	미국
9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Squire Patton Boggs (U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김준용	2012.9.26	미국
10	코빙턴 앤드 버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Covington & Burling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윌리엄 하용 박	2012.10.18	미국
11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O'Melveny & Myer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박진원, 강성룡, 김용상	2012.11.6	미국
12	케이&엘 게이트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K&L Gate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윤석주	2012.11.15	미국
13	디엘에이 파이프 유케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DLA Piper UK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2014-06-24 설립인가취소 ※ 2014-06-30 디엘에이 파이프 유에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2012-12-24 2014-06-24 설립인가 취소	영국
14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엘엘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Herbert Smith Freehill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마이클 존 맥클루어	2013.2.20	영국
15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Greenberg Traurig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김창주	2013.2.20	미국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칭	대표자	설립인가일	본점 사무소 소재국
16	맥캐나 롱 & 알드리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McKenna Long & Aldridge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덴톤스 유에스(Dentons US LLP)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Dentons U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명칭 변경	앤드류 정근 박	2013.3.5	미국
17	링크레이터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Linklater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스티븐 제이 르 비스쿠테	2013.4.11	영국
18	베이커 앤드 맥켄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Baker & McKenzie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이 원	2013.4.25	미국
19	스캐든 압스 슬레이트 미거 앤 플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Skadden, Arps, Slate, Meagher&Flom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신현영	2014.3.17	미국
20	디엘에이 파이프 유에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DLA Piper LLP (U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이원조	2014.6.30	미국
21	스티븐슨 하우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Stephenson Harwood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김경화	2014.8.4	영국
22	리, 홍, 데거만, 강 앤 웨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eoul)	사이먼 성진 홍	2014.11.10	미국
23	밀뱅크 트워드 해들리 앤 맥클로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Milbank, Tweed, Hadley & McCloy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김영준	2015.1.22	미국
24	피네간 헨더슨 파라보우 개럿 앤 던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찰스 혁 서	2015.3.27	미국
25	코브레 & 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Kobre & Kim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백재형	2015.8.13	미국
26	알렌 앤 오버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Allen & Overy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마티아스 유리겐 헬무트 보스	2015.8.13	영국
27	화이트 앤 케이스 엘엘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White & Case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제임스 기성 이	2015.8.13	미국
28	레이탐 앤 왓킨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LATHAM & WATKIN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김지현 헬레나	2016.10.13	미국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등 현황은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정보 ➡ 법률시장 개방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